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2019.7.16. 1차례 직접교부송달, 2019.8.5.과2019.8.6. 2차례 등기우편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점유자: 장문현
2. 점유지 및 면적: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 36㎡,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 497㎡
3. 점유기간: 2018.01.01.~2018.12.31. (365일)
4. 변상금(예정):
 - 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 - 269,560원
 - 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 - 11,331,600원
5.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6. 공고기간: 2019.8.16. ~8.30.(15일간)
7. 의견 제출기한: 2019.8.30. 까지
 -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임
8. 의견 제출내용
 -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9. 기타문의
 -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전화 02-948-5668, 팩스02-972-0631)

2019. 8. 16.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